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106호

2020. 9. 2.

건 명	논산시 행복키움수당 (사회복지과)	지원에 관한 조리	ll 일부개정조례안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8. 25.
소 관 위 원 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8. 25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육아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행복키움 수당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~2조)
 - "아기"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.

□ 검토의견

○ 행복키움수당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, 「영유아보육법」제4조, 「충청남도 행복 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」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